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보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1018호 2014. 4. 7.(월)

차 례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16호 인천광역시 서구 미술품 취득 및 관리규정 ------ 1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4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8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4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10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391호 2013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 1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41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2호선) 실시계획 인가 열람 공고 ---------- 19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4-98호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환지처분 공고 -------- 22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미디어과 [032-560-4142]**

이윤정/서구|총무국|홍보미디어과/2014-04-07 10:06:15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미술품 취득 및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전 년 성

2014년 4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16호

인천광역시 서구 미술품 취득 및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관리와 미술품 취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정함을과 같다.

1. “미술품” 이란 한국화(병풍 및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한 작품을 말한다.
2. “출납” 이란 미술품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인천광역시 서구 및 그 소속기관에서 구매(자체제작 포함),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대상으로 한다.

②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마술품 가치등급 분류) 미술품의 보존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술적·재산적 가치 및 가격기준에 따라 미술품의 가치등급을 별표와 같이 분류한다.

이윤정/서구|총무국|홍보미디어과/2014-04-07 09:31:40

제5조(취득) 미술품의 취득은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에 의한다.

제6조(관리책임) ① 관리책임관은 문화관광체육과장, 관리책임자는 미술품 관리담당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관은 미술품의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책임관 등의 사무) ① 관리책임관은 미술품의 관리·출납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관리책임자와 관리담당자는 관리책임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미술품의 관리·출납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보존 및 관리) ① 관리책임관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관리의 전반에 대하여 책임진다.

② 관리책임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 ·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시중인 미술품은 그 위치를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전시하지 않는 미술품은 따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미술품의 관리나 전시를 위하여 수선을 하거나 비치장소를 변경하는 등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술품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미술품 관리책임관은 1년에 한 번 보관상태 등을 점검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카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대장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4조에 의해 A, B등급으로 분류된 미술품은 5년마다 각 분야별 감정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실물감정을 한 후 작품가액에 반영하고, 등급분류에 오류가 있을 경우 재분류한다.

⑤ 제3항의 내용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이윤정/서구|총무국|홍보미디어과/2014-04-07 09:31:40

갈음 할 수 있다.

제9조(망실 · 훼손 보고) 관리책임관은 미술품의 망실·훼손이 되었을 때에는 즉시 상세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책임) 구청장은 제9조의 보고를 받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미술품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미술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미술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수복 등) ① 관리책임관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하여 원형대로의 유지·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 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관은 미술품의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후 조례 제16조, 제17조, 제18조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이 정한 이외의 사항은 조례 및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윤정/서구|총무국|홍보미디어과/2014-04-07 09:31:40

[별표]

미술품 가치등급 분류 기준표(제4조 관련)

1. 예술적 · 재산적 가치에 의한 분류

등 급	분 류 기 준
A등급	• 근현대 미술사적으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작고작가와 생존 원로 작가의 대표작품 • 작가는 분명치 않으나 추정 제작시대나 사조를 대표하는 작품 (민화나 풍속화·공예품의 경우)
B등급	• 근현대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작고작가와 생존작가의 우수작품 • 작가는 분명치 않으나 추정 제작시대나 사조의 우수작품 (민화나 풍속화·공예품의 경우)
C등급	• 미술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작품
D등급	• 장식적 가치가 있는 작품

2. 가격 기준에 의한 분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	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 ~500백만원 이상	취득가격 50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취득가격 50만원 미만

이윤정/서구|총무국|홍보미디어과/2014-04-07 09:31:40

[별지 제1호서식]

미술품 관리카드

(앞 면)

부 문		분류번호		
작 가 명		작 품 명		
크 기		취득일자		
취득사유		작품 가액	취득가격	
			추정가격	
			감정가격	
작품등급		상태구분		
게시(보관)장소		특기사항		
비 고				
작품사진				

※ 기재방법은 별지 제2호 서식 준용

이윤정/서구|총무국|홍보미디어과/2014-04-07 09:31:40

(뒷 면)

미술품 관리이력

연번	구분	일자	변동내용	변동사유	담당자 서 명	비고

이윤정/서구|총무국|홍보미디어과/2014-04-07 09:31:40

[별지 제2호 서식]

미술품 관리대장

보유기관명 : (단위: 천원)

연번	부문별 ①	분류번호 ②	작가명 ③	작품명 ④	크기 ⑤	취득일자 ⑥	취득사유 ⑦	작품가액⑧			작품등급 ⑨	상태구분 ⑩	게시(보관) 장소 ⑪	특기사항 ⑫	비고 ⑬
								취득가격 1	추정가격 2	감정가격 3					
계															

※ 1. 부문별 코드에 의해 관리한다.
한국화(1) - 병풍,족자 포함, 서양화(2), 판화(3), 서예(4), 조각(5), 도자기(6), 사진(7), 공예품(8), 기타(9)
2.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하여 등재(예시: 1-1, 1-2, 2-1, ...)
3. 작가의 이름과 호를 기재(작가를 모를 경우 “작가미상”으로 기재)
4. 작품명 또는 작품내용을 간략하게 소개
5. 가로, 세로, 높이를 cm단위로 기재
6. 취득(구입, 기증, 관리전환)일자를 기재하되 정확한 일자를 모를 경우 연도만을 추정하여 기재
7. 취득사유 : 구입, 기증, 관리전환 등으로 표시
8. ⑧-1: 취득(구입) 당시의 장부가격을 기재
⑧-2: 기증품 등 정확한 가격을 모를 경우 추정가격(화랑, 협회 등에 문의)을 기재
⑧-3: 전문가의 감정을 받았을 경우 감정가격을 기재
※ 작품가액 우선순위는 감정가격, 취득가격, 추정가격으로 함.
9. 별표 미술품 가치 등급 분류표에 의거하여 등급분류(A등급~D등급)
10. 단계별 상태구분을 참조하여 관능으로 판단하여 기록
11. 게시(보관)되어 있는 실제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
12. 진품과 복제품 구분, 서양화에 대하여는 유화, 수채화 등으로 세분, 기타 특기사항을 간략히 기재
13. 이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동장소, 사유, 일자 등을 기재

◇ 단계별 보존상태 구분

상 태 구 분		세 부 내 용
양 호		○ 상태가 양호한 작품
보 통		○ 현재상태는 양호하나 관리에 주의을 요하는 작품 ○ 표면적인 손상은 없으나 손상요인이 있는 작품 ○ 1회이상 수복된 작품
훼 손	① 수복필요	○ 일부 손상이 있으나 더 이상 진행이 없고 보존상 지장이 없는 작품
	② 수복시급	○ 작품의 손상 정도가 심하여 더 이상 방치시 원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품

이윤정/서구|총무국|홍보미디어과/2014-04-07 09:31:40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4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4. 0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서곶로 277외 2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4. 04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이윤정/서구|총무국|홍보미디어과/2014-04-07 09:32:24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4-04-04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심곡동 248-6, 248-5	서곶로 277	2009.08.28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2	인천 서구 경서동 842-27	청라한울로59번길 13	2011.02.14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5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 서구 경서동 968-3	청라루비로42번길 6-4	2011.02.14	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 서구 경서동 976-6	푸른로8번안길 10	2013.07.30	푸른로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 서구 경서동 976-11	푸른로8번안길 5	2013.07.30	푸른로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 서구 경서동 966-4	청라루비로42번길 5-14	2011.02.14	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 서구 연희동 378외 329필지	봉수대로 806	2009.07.01	축곶 봉수지역과 백석 봉수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로 옛지명을 반영	
8	인천 서구 연희동 763-10	청라라임로138번길 15	2011.02.14	청라라임로의 시작점에서 1,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35-11블럭	검단로 46	2008.12.31	현 금곡동 쇳골마을 뒷산 사자봉 남쪽 기슭에 검데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지명 부여	
10	인천 서구 금곡동 519-7	봉수대로 1668	2009.07.10	축곶 봉수지역과 백석 봉수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로 옛지명을 반영	
11	인천 서구 금곡동 519-1	봉수대로 1670	2009.07.10	축곶 봉수지역과 백석 봉수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로 옛지명을 반영	
12	인천 서구 백석동 58-2일원	거첨로 295	2009.09.22	거첨도를 지나 신규등록지 사이의 도로	
13	인천 서구 불로동 불로지구 37블럭 14로트	검단로744번3길 23	2008.12.31	검단로744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세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 서구 금곡동 400-1	봉화로223번안길 12-6	2009.09.22	봉화로223번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 서구 불로동 265-11	고산후로 244	2008.12.31	고산후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	

이윤정/서구|총무국|홍보미디어과/2014-04-07 09:32:53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4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4. 04. 0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석남동 223-359	봉수대로 302	2014.03.21	건축물 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이윤정/서구|총무국|홍보미디어과/2014-04-07 09:34:1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391호

2013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3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 합니다.

2014. 4 . 7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윤정/서구|총무국|홍보미디어과/2014-04-07 09:35:47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전년도에는 재난이 2회 발생하여 피해는 23건 126백만원이며, 복구는 23건 21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재난 유형별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 2회 발생하였으며 피해는 126백만원이며, 재해복구는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1개과 10명이고,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4종으로 4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적립은 당해연도 확보기준액 821백만원 대비 100%확보되었습니다.

◈ 「자연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 진단은 2013년의 경우 다그룹 6등급입니다.

※ (안전) 1등급/그룹 '가' <------> 10등급/그룹 '마' (위험)

◈ 그 밖에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전체대상시설 중 45%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윤정/서구|총무국|홍보미디어과/2014-04-07 09:35:47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①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시	재난(피해)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7.11~15	집중호우	-사유시설 : 주택침수 21건	- 사유시설 : 재난지원금 19,500천원 지급	완료
7.22~23	집중호우	-사유시설 : 주택침수 2건	-사유시설 : 재난지원금 2,000천원 지급	완료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나. 정원

과 별		계	일 반 직							기능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안전관리과	정원	11			1	4	2	2	2		
	현원	11			1	5	3	1	1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	서구청
우량관측장비	3	서구청, 검단출장소, 가좌4동 주민센터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36	
위성전화기	3	서구청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가.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실시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공무원 심폐소생술 체험학습	'13. 5.10	서부소방서	26명	

이윤정/서구|총무국|홍보미디어과/2014-04-07 09:35:47

나.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2013.10.15	서구 민방위교육장	21	지역자율방재단 임무와 역할 숙지	서구청	

다. 재난관리예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 해당사항 없음

라.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봉사단원 및 제보실적

◈ 제보・처리 실적

봉사단원	제보실적	처리실적			비 고
		완료	진행	불가	
안전모니터봉사단	39	39	-	-	

마.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 해당사항 없음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 위원장 : 구청장 • 위원 : 18인	•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전관리실무 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 위원장 : 부구청장 • 위원 : 18인	•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 •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 지역본부장 : 구청장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 상황실책임자 : 안전관리과장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안전행정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2013년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행동매뉴얼	자연재난에 대한 유형별, 상황별, 부서별 세부시행 메뉴얼	2013.4.17	

이윤정/서구|총무국|홍보미디어과/2014-04-07 09:35:47

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 해당사항없음

⑹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가. 총괄현황

지역	계	A급	B급	C급	D급	E급
합계	452	171	228	4	21	28
서구	452	171	228	4	21	28

나. 유형별 현황

구분	관리대상 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계	A급	B급	C급	계	D급	E급
총합계	455	406	174	228	4	49	21	28
시설물 합계	19	19	7	9	3	0	0	0
도로시설	8	8	0	6	2	0	0	0
- 교량	1	1	0	0	1	0	0	0
- 육교	7	7	0	6	1	0	0	0
축대,옹벽,석축	11	11	7	3	1	0	0	0
건축물 합계	433	384	164	219	1	49	21	28
지방공공청사	20	20	7	13	0	0	0	0
공동주택	193	162	0	161	1	31	3	28
- 아파트	90	59	0	59	0	31	3	28
- 연립주택	103	103	0	102	1	0	0	0
다중이용건축물	130	130	94	36	0	0	0	0
- 판매시설	1	1	0	1	0	0	0	0
- 대형숙박시설	22	22	14	8	0	0	0	0
- 대형목욕장	13	13	6	7	0	0	0	0
- 공연시설	1	1	0	1	0	0	0	0
- 집회시설	3	3	3	0	0	0	0	0
- 의료시설	15	15	8	7	0	0	0	0
- 종교시설	43	43	41	2	0	0	0	0
- 위락,휴게시설	8	8	6	2	0	0	0	0
- 비디오,게임제공업	11	11	7	4	0	0	0	0
- 산후조리원	2	2	2	0	0	0	0	0
- 고시원	9	9	6	3	0	0	0	0
- 화상대화방	2	2	1	1	0	0	0	0
대형건축물	2	2	2	0	0	0	0	0
대형광고물	9	9	8	1	0	0	0	0
건축공사장	18	0	0	0	0	18	18	0
- 대형건축공사장	17	0	0	0	0	17	17	0
- 중단된건축공사장	1	0	0	0	0	1	1	0
위험물시설	61	61	53	8	0	0	0	0
- 가스취급시설	56	56	51	5	0	0	0	0
- 유독물취급시설	4	4	2	2	0	0	0	0
- 화학물질취급시설	1	1	0	1	0	0	0	0
자체관리대상건축물 합계	3	3	3	0	0	0	0	0
- 일반건축물(자체관리건축물)	1	1	1	0	0	0	0	0
- 기타(자체관리건축물)	2	2	2	0	0	0	0	0

이윤정/서구|총무국|홍보미디어과/2014-04-07 09:35:47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 재난의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
※ **중점관리대상시설** :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와 이용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 **재난위험시설** : 긴급히 보수·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제한을 요할 정도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
※ **A등급** :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시설(이상이 없는 시설)
※ **B등급** :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시설
※ **C등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상태로 조속한 보수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 필요한 시설
※ **D등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로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여부 판단 필요 시설
※ **E등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사용금지 또는 개축이 필요한 시설

⑺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실적		
	개소	사업량	사업비
계	1,413		8,075,000
관거정비	1,400	집수받이 및 하수도 정비	1,100,000
관거준설	11	관거준설 L=35,000m	475,000
기 타	2	하수박스설치 L=1,254m 하수관거설치 L=682m	6,500,000

※ 건설과 자료참조

⑻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가. 인 력

①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원자력	삭제도	유가장	기타
총계	30	8	10	0	1	1	4	0	0	0	1	5

② 기능인력

구분	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착암공	절단공	용접공	철근공	중기운전	중기정비	배관공	승강기안전관리원	기타
총계	56	10	2	10	0	0	7	0	2	1	2	0	22

③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 소방대	산악 구조대	수중 구조대	아마추어 무선봉사대	기타	적십자 봉사대	새마을 부녀회	해병 전우회	모범운 전자회	여성단체 협의회	기타
총계	단체	8	1		1		1	1	1	1	1	1	
	인원	2,857	242		9		380	112	335	500	170	1,109	

나. 장 비

① 구조장비

이윤정/서구|총무국|홍보미디어과/2014-04-07 09:35:47

구분	계	사다리차	구조공작차	배연차	헬기	매몰자탐지기	구조용로프	구명보트	구명환	구명동의	산소호흡기	잠수세트	유압잭	에어백	기타
총계	56	3	1	1			8	3	7	11		19	2	1	

② 복구장비

구분	계	크레인	굴삭기	불도저	덤프	로우더	견인차	청소차	기타
총계	52		3		6			14	29

③ 산불진화장비

구분	계	헬기보유	헬기임차	산불진화차	동력펌프	등짐펌프	동력톱	지휘이동차량	간이수조	진화도구	진화안전장비세트	기타
총계	1,892			3	5	417	7	1		1,435	24	

④ 기타장비

구분	계	용접기	콤프레샤	양수기	발전기	천공기	착암기	절단기	화학차	전기복구차	가스복구차	통신복구차	제독차	기타
총계	446	1	1	322		1		2	3	1				115

다. 물 자

① 방재물자

구분	계	오일휀스	유흡착제	흡착롤	유처리제	중화제	황토반고체	황토반토액체	소석회	활성탄	가성소다	분말염소
		km	천매	km	kl	kl	ton	kl	ton	ton	ton	ton
총계	7종	0.15	1.3	0.05	0.82	0.4	0.2		0.2			

라. 시 설

① 의료시설

구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계		376	573	698	18	4,273	4
총계	병원	303	494	671	16	4,273	4
	보건소	2	6	22	2		
	기타	71	73	5			

② 수용시설

구분	개소	수용인원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총계	34	7,225	28	6,225	1	100	2	200	2	600	1	100

이윤정/서구|총무국|홍보미디어과/2014-04-07 09:35:47

(9)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없음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 연도별 재난관리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타지출	
2008년까지	3,882,620	2,999,398		883,222		58,961	58,961			3,823,659
2009	439,270	308,996		130,274		66,030	66,030			373,240
2010	592,766	389,282	20,000	183,484		251,276	251,276			341,490
2011	681,444	482,650	12,296	184,923	1,575	203,107	203,107			478,337
2012	801,590	585,457	56,000	160,133		213,156	213,156			588,434
2013	1,236,454	821,204	233,100	182,150		667,744	667,744			568,710

④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구 분		2013년 진단결과					
시도	시군구	위험환경	관리능력	방재성능	안전도 (방재성능80%)	등급	그룹
인천	서구	0.339	0.723	0.453	0.619	6	다

* (안전) 1등급/그룹 '가' <------> 10등급/그룹 '마' (위험)

※ **지역안전도 진단**
- 통계자료에 대한 전산분석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진단반의 현지진단을 통해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지역의 안전한 정도를 진단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 **지역안전도 진단목적**
- 시·군·구별 피해발생빈도, 피해규모 및 피해저감능력 등의 분석을 통해 지역의 **재해취약요소**를 **도출**하고 **개선**함으로써
- 방재정책 전반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및 **지자체 자율방재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안전도 진단 실시

※ **분야별 진단방법**
- **위험환경** : 잠재적 재해발생 가능성 및 환경적 위험도 진단
- **위험관리능력** : 재해저감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도 진단
- **방재성능** : 지역의 구조적인 재해대응능력 진단

⑤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인천광역시서구청 안전관리과(담당자 : 한연동, 전화 : 032)560-4703)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서구|총무국|홍보미디어과/2014-04-07 09:35:4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41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2호선)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소로3류2호선, 사업명 : 공촌취락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476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공촌동 4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도로(소로3류2호선)
   【명칭】 공촌취락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L=231m, B=6m, A=2,09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과 같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과 같음
9.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윤정/서구|총무국|홍보미디어과/2014-04-07 09:37:07

■ 용 지 조 서

공촌 취락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공촌동 47-1	전	247	1	이경숙	서구 서곶로 450번지 24				
2	공촌동 47-35	전	223	223	국	재정경제원				
3	공촌동 산38-2	구	23	23	김성자 외1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47				
4	공촌동 47-10	임	711	81	윤대석 외1인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47-9	중소 기업 은행	서울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 당권	
5	공촌동 40	전	1,491	381	이태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90-22 임창빌라 비동 306호				
6	공촌동 41-1	전	7	7	정홍섭 외8인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17	근로 복지 공단	경인지역 본부	압류	6/22
7	공촌동 40-2	구	2,003	19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	공촌동 산41-2	구	893	76	국	농림부				
9	공촌동 산41-1	임	1,190	426	국	산림청				
10	공촌동 18-1	전	3,264	634	정복섭 외2인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1-2	서인천 농업협 동조합	인천서구 가정로353	근저 당권	667.5 /3643
11	공촌동 20	전	1,699	16	이명수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6-17				
12	공촌동 산42-3	임	99	18	국	산림청				
13	공촌동 11-20	도	3,246	4	국	인천광역시 서구				
14	공촌동 18-7	도	199	2	국	인천광역시 서구				
계			15,295	2,090						

이윤정/서구|총무국|홍보미디어과/2014-04-07 09:37:07

■ 지 장 물 조 서

번호	소 재 지	규 격	수량	소 유 자	비 고
1-1	인천광역시서구 공촌동47-10	H=4.0m, 측백나무	18 주	인천광역시서구 공촌동산47-9	윤대석 외1인
1-2	"	H=2.0m, 측백나무	36 주	"	"
2-1	인천광역시서구 공촌동40	H=0.6m, 묘목	5 주	인천광역시계양구 계산동990-22 임창빌라비동306호	이태순
2-2	"	H=1.5m, 묘목	23 주	"	"
2-3	"	H=2.0m, 철골/망	20.5 m	"	"
2-4	"	5.2×10.0 철골/비닐(52.0㎡)	1 동	"	"
3-1	인천광역시서구 공촌동40-2	H=1.8m, 메쉬휀스	2.4 m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한 국 농어촌 공 사
3-2	"	H=2.0m, 철골/망	38.6 m	"	"
3-3	"	5.5×6.9 판자/슬래트(7.0㎡)	1 동	"	"
4-1	인천광역시서구 공촌동18-1	6.3×52.2 철골/비닐(331.0㎡)	1 동	인천광역시서구 공촌동11-2	정복섭 외2인
4-2	"	1.6×8.3 철골/비닐(14.0㎡)	1 동	"	"
4-3	"	6.4×73.7 철골/비닐(206.0㎡)	1 동	"	"
4-4	"	6.4×73.7 철골/비닐(75.0㎡)	1 동	"	"
4-5	"	조립식, 간이화장실	1 동	"	"
4-6	"	유류저장 탱크	1 EA	"	"
4-7	"	유류저장 탱크	1 EA	"	"
4-8	"	PE 물탱크	1 EA	"	"
4-9	"	전력 계량기	1 EA	"	"
4-10	"	체신주	1 주	"	"
4-11	"	체신주	1 주	"	"

이윤정/서구|총무국|홍보미디어과/2014-04-07 09:37:07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4 - 98호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환지처분 공고

1.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환지대상 토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366호(2008.12.29.)】및 환지계획 인가【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903호(2009.07.30.)】되고, 조성사업 준공인가【인천광역시 공고 제2014-437호(2014.03.31.)】되었기에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도시공사 단지개발처 검단사업팀(☏032-260-550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며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합니다.

2014년 04월 0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사업의 명칭 :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 시 행 자 : 인천도시공사
○ 시 행 면 적 : 2,250,719.2㎡ (환지대상면적: 135,522.4㎡)
○ 시 행 기 간 : 2006년 ~ 2014년

2. 환지처분일 : 2014년 04월 07일

3. 정산내역

○ 청산금 집계

구 분	필지수	과부족면적(㎡)	과부족청산금(원)	비고
계	44	38,596.0	29,178,576,000	
과도면적 징수금	40	38,958.7	29,452,777,200	
부족면적 교부금	4	(-)362.7	(-)274,201,200	

이윤정/서구|총무국|홍보미디어과/2014-04-07 09:37:46

4.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 체비지 매각대금 : 해당사항 없음

○ 보조금 : 없음

○ 사업비별 재원 내역 : 해당없음(수용대상에 포함)

○ 청산금 내역

- 징수청산금

구 분	필지수	과도면적(㎡)	과도징수청산금(원)	비고
과도환지 징수청산금(원)	40	38,958.7	29,452,777,200	

- 교부청산금

구 분	필지수	부족면적(㎡)	부족도교부청산금(원)	비고
부족환지 교부청산금(원)	4	(-)362.7	(-)274,201,200	

5. 환지처분 후 이행사항

-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를 한 이후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한 등기는 정지되며,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권리변동 사항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징수 후 「도시개발법」제43조에 의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및 촉탁하고,
- 같은 법 제46조에 의하여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게 되며, 과도청산금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부족청산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산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단지개발처 검단사업팀(☎032-260-5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서구|총무국|홍보미디어과/2014-04-07 09:37:46